

변경 주요내용

1. 대상 투자신탁 : 하이 지주회사 플러스 증권 투자신탁 1호[주식]
2. 변경 시행일 : 2010년 1월 11일
3. 변경 사유 :
 - 가. 조직개편에 따른 운용역 변경 : “송이진”에서 “이건학, 배재훈, 기호진”으로 변경
 - 나. 금융투자업규정 및 이익분배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다. 기준일 현재 수익률 자료 등 업데이트(갱신)
4. 변경 주요 내용
 - 가. 집합투자계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제18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에 따라 투자신탁채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지 4. (생략) 5.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5%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다. 6. 내지 8.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에 따라 투자신탁채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지 4. (현행과 같음) 5.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5%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6. 내지 8. (현행과 같음)
제33조 (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단서 추가> ② (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신설>	이 신탁계약은 2010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나. 신고서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010-01-11 신탁계약 변경(금융투자업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5.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2009.2.28 현재 : 송이진	2010.01.11 현재 : 이건학, 배재훈, 기호진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⑤집합투자증권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자산총액의 30%까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음	⑤집합투자증권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추가>	※ 멀티매니저 제도 운영 - 한 펀드의 자산을 복수의 펀드매니저가 분할, 운용하는 시스템 - 펀드매니저의 운용집중화 및 복수의 펀드매니저에 의한 운용위험분산 추구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009.02.28 현재	2010.01.01 현재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분배	단서 추가	다만,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제2기 (2008-01-15~2009-01-14) 기준	제3기반기 (2009-01-15~2009-07-14) 기준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	2009.02.28 현재	2010.01.01 현재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2008.03.31 기준	2009.03.31 기준

라. 운용자산 규모	2009.02.28 현재	2009.12.31 현재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주)SC제일펀드서비스	(주)SC펀드서비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2009.02.28 현재	2010.01.01 현재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 (www.hi-am.com)를 참조하십시오	삭제

끝.